

체육관 사용 규정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체육관 사용과 시설물 및 기구의 보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관리운영) 체육관 내의 시설물 및 기구의 보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체육관련 학과가 소속하는 단과대학장이 관장한다.

제 3조 (사용범위) ① 체육관은 본 대학 체육관련 학과의 수업시간표에 의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대학 체육관련 학과 소속팀과 외부팀과의 친선 및 연습을 위한 체육관 사용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외부단체에서의 체육관 사용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국제경기 등 부득이 외부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주일 전에 별첨 양식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학장은 반드시 사무처장 경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 5. 1)

제 4조 (대관기준) 체육관의 대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행사
2. 본 대학 주관 행사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 5조 (대관승인 제한 및 보상) ①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와 관리상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② 체육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설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사용시간) ① 체육관 사용시간은 08:00부터 19:00까지로 한다.

② 규정한 사용시간외로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관 대관 신청 시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조 (사용료) ① 체육관 대관 시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단, 수업 및 본 대학 행사는 제외한다.

②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제 8조 (엄수사항) 체육관을 사용할 때에는 아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.

1. 실내 금연
2. 식 · 음료 반입 업금
3. 실내운동화 착용
4. 사용시간 엄수
5. 입장정원 엄수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